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 수립주기 변경 근거 마련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659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기본계획 수립주기 변경 근거 마련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	3
2.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차단, 삭제 명령 ..	6

I. 개요

1.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65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지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과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

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기본계획 수립주기 변경 근거 마련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

□ 개정안은 현행 5년인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5년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살예방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u>
<u>④</u> (생략)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u>5년</u> 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 ----- ----- ----- <u>3년</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립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4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경우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집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주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수립¹⁾되었음.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그 완료시점 이전에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면 기본계획의 안정성이나 신뢰성 또는 연혁적 진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수립주기의 완료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할 수 있고, 유사한 입법례²⁾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개정안은 수립주기의 단축 사유로서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만을 들고 있는데, 이는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자살 유발정보³⁾가 정보통신망⁴⁾에서 단시간에 급속도로 유통되는 현상

1)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대상연도는 2016~2020년이었고, 제4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대상연도는 2018~2022년이었음.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14. (생 략)

② 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자살예방에 불리한 그 외의 사정변경의 발생에 대하여도 수립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나 행정력을 감안할 때 그 실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 유사한 정책분야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태조사 주기가 5년⁵⁾인 점, 자살률의 급작스러운 증가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⁶⁾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率) 및 유병요인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4.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7.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차단, 삭제 명령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차단 또는 삭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u><신 설></u> <u>②·③ (생략)</u>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항제3호의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u>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⑨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차단되거나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 ----- ----- ----- ----- ----- ----- -----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로 정의⁷⁾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⁸⁾하고 있음.

□ 참고로 최근 연간 자살유발정보 신고는 매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연간 자살유발정보 신고 및 자살로 인한 사망 현황 >

(단위 : 건 · 명)

연도	자살유발정보 신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2019	32,588	13,799
2020	90,772	13,195
2021	142,725	13,352
2022	234,064	12,906
2023	303,636	13,978

* 출처: 보건복지부

□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현행법에는 없는데,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⁹⁾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차단, 삭제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자살유발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하여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체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의 자살유발정보와 같은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정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정 요구 불응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이와 같은 일반적인 체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을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도록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불법정보와 달리 이러한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역할을 담당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다른 불법정보 처리 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 등을 고려 시 정부가 직접 내용심의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8